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국 명	페이지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기획재정국	1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기획재정국	7

(2012. 11. 30)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재정국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9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2일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5. 2013년도 마포구 세출예산안 총괄

○ 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370,515,887	330,831,784	39,684,103	12.00
일반회계	320,726,000	279,281,494	41,444,506	14.84
특별회계	49,789,887	51,550,290	△1,760,403	△3.41
의료보호기금	409,120	381,000	28,120	7.38
마포농수산물시장	5,274,331	7,903,342	△2,629,011	△33.26
주차장	44,106,436	43,204,716	901,720	2.09
기반시설부담금	0	61,232	△61,232	△100

6.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		
총 계	11,310,112	3.53 %	10,216,417	3.66 %	1,093,695	10.71 %
기획예산과	5,060,444	1.58 %	4,503,982	1.61 %	556,462	12.35 %
지역경제과	1,695,458	0.53 %	1,605,822	0.57 %	89,636	5.58 %
재무과	305,395	0.10 %	327,615	0.12 %	△22,220	△6.78 %
전산정보과	2,946,887	0.92 %	2,510,448	0.90 %	436,439	17.38 %
세무1과	537,550	0.17 %	548,689	0.20 %	△11,139	△2.03 %
세무2과	764,378	0.24 %	719,861	0.26 %	44,517	6.18 %

[검토보고]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3 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0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792억 8,149만 4천원보다 414억 4,45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자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7억 7,629만 1천원이 증액된 776억 3,71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4억 3,359만 2천원이 증액된 697억 6,475만 7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자주자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474억 194만 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대비 약 45.96%에 해당되며 감소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지방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44억 9,1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세인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1억 6,095만 4천원이 증액된 553억 6,158만 3천원, 세목교환과 자동차분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금인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30억 9,028만 2천원이 감소된 13억 5,184만 8천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98억 695만 1천원 증가된 1,121억 1,962만 3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총 1,733억 2,405만 4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대비 54.04%가 되겠음.
- 2013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억 1,011만 2천원으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07억 2,600만원 대비 약 10.71%에 해당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102억 1,641만 7천원보다는 10억 9,3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획예산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5,646만 2천원이 증가한 50억 6,044만 4천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용은 정책사업인 성과 지향적 구정운영 사업에서 4대 성장동력 거점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 마포 사회조사 시행으로 인한 통계조사 및 웹서비스 제공관련 7,568만 9천원이 증액된 8,553만 9천원, 내실있는 법무행정 관련 법무업무관련 사이트 개선, 소송비용 등에 1,39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468만 5천원, 예비비로 2억 9,090만 7천원이 증액된 28억 7,878만 2천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이 3,439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4,9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직원 현원 및 신규직원 감소에 따라 급량비, 여비 등이 포함된 기관공통운영경비가 1억 245만 1천원 감액된 7억 7,680만 6천원, 창의실용 추진관련 토론패널 워크숍 축소 및 업무추진비 감액에 따라 310만원 감액된 1,110만원, 직원정원 감축에 따라 기본경비가 472만원 감액된 1억 2,105만 2천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963만 6천이 증가한 16억 9,545만 8천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용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관련 국외업무여비가 6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서울형 특화산업(디자인출판) 진흥계획 관련 지역산업공동체 앵커시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로 3억 9,748만원 증액된 4억 72만원,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 관련 701만 5천원 증액된 2,360만원, 동물보호관리 관련 유기동물 새가족 맺어주기, 동물등록 수수료 등에 3,046만 4천원 증액된 1억 3,494만원, 직원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가 930만원 증액된 1억 3,679만 4천원, 보전지출로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8,776만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으로 1억 4,346만원 감액된 2,655만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관련 서울시 심의에 의거

2건 예산배정으로 1억 8,380만원 감액된 5억 8,938만 6천원, 물가조사 및 안정적 관리 관련 개인서비스요금 조사요원 축소로 555만 6천원 감액된 2,934만 9천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대상가구 축소로 352만 8천원 감액된 204만 4천원이 편성되었음.

○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222만원이 감액된 총 3억 539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심사팀의 소속변경에 따라 기본경비가 1,851만 7천원 감액된 6,495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특별한 변동사유 없음.

○ 전산정보과의 세출예산액은 4억 3,643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4,688만 7천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유지보수 대상업무 추가 구매 등으로 5,377만원이 증액된 2억 5,656만 2천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관련 CCTV 유지보수대상 물량 추가, U-City 시설물 유지보수 물량 추가 등에 5,725만 2천원 증액된 7억 5,068만 9천원, 정보화교육 및 정보 서비스 향상 관련 정보화교육 전임강사료 단가상승분, 컴퓨터 메모리 구매 등으로 1,049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2,915만 8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관련 노후통합스토리지 교체, 방범용 CCTV 구매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포함 4억 141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3,3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분납비 감액으로 사무관리비 829만 4천원 감액된 8,385만 3천원, 행정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연구개발비 3,35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자가망 및 CCTV 긴급복구공사,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1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관련 인센티브 예산반영으로 1억 2,198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4,35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관련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1,308만 2천원이 감액된 9,217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113만 9천원이 감소된 5억 3,755원이 편성되었음.

-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관련 일반 운영비 및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보수비가 3,312만 6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보다 4,451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6,437만 8천원이 편성되었음.

[검토의견]

- 동 안건은 건전재정을 목표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최대한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으나,
내년도 의존재원이 54.04 %로서 금년도 50.84 %보다 3.2%가 증가하여 의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제의 둔화와 이에 따른 여파와 국내의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복성, 낭비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여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징수 활동 강화와 함께 탈루재원을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 재원의 확충에 적극적인 자세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안 건 명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기획재정국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9일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2일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5. 기획재정국 기금조성 현황

○ 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2012년도 말 현재액 ㉑	2013년도 기금운용			2013년도말 현재액 ㉒=㉑+㉓
		수 입㉔	지 출㉕	증 감 ㉖=㉔-㉕	
통합관리기금	24,921,553	1,335,687	2,746,240	△1,410,553	23,51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300,000	3,114,588	3,701,120	△586,532	713,468

[검토보고]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자원조성은 구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13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262억 5,724만원으로 수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568만 7천원, 예수금 3억원, 예치금회수 249억 2,155만 3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수금원리금상환 27억 4,624만원, 예치금 235억 11,00만원이 되겠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되었고 자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 등이 되겠으며, 2013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44억 1,458만 8천원으로 수입재원은 융자금회수 30억 8,000만 2천원, 예치금회수 1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58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비 2억원, 민간융자금 35억원과 예치금 7억 1,346만 8천원이 되겠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전출금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되는 기금인 만큼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